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이하 “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제59조에 따라 정보교류통제를 관리하는 담당조직으로 준법감시팀을 지정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의 총괄 책임임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제60조에 따라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정하였습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중 제외된 정보

-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다. 채무증권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승인한 정보

####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제외된 정보

- 가.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나. 판매회사 및 고객 등에 제공하는 5영업일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승인한 정보

##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 가. 고유재산의 운용업무와 위탁재산(집합·투자일임)의 운용업무간
- 나. 위탁재산의 운용업무 중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부서 또는 팀 단위의 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 2.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가.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의 금융투자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 판단

-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매매거래 제한
-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구분	이해상충 거래유형	대응방안
회사 vs 고객	고유재산으로 당사가 운영하는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정보교류금지대상정보의 교류 차단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가능)</li> <li>■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 사이 조직 분리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li> <li>■ 정보교류 차단/ 조직 분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금지</li> </ul>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5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시 거래 금지</li> </ul>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거래 금지</li> </ul>
임직원 vs 고객	금융투자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 있어서 선행매매를 하거나 부당정보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사전 승인, 매매 보고 등)</li> <li>■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및 부당정보 이용행위 금지</li> </ul>
고객 vs 고객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5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시 거래 금지</li> <li>■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li> </ul>

※ 위에 기술한 이해상충 거래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회사는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하에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것임.

####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1. 고객이익 우선원칙

- 가.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나.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다.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 2.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가.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됨
- 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 마.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바. 나. 내지 마.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끝.